

# 서울특별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안 설 명

의안 번호	2428
----------	------

곽향기 의원 (국민의힘, 동작3)

- 존경하는 이병윤 위원장님과 이경숙·김성준 부위원장님 그리고 선배·동료 위원 여러분! 안녕하십니까? 동작 제3선거구 출신 국민의힘 곽향기 의원입니다.
- 화물차 교통사고의 경우 교통법규 위반뿐만 아니라 과적, 적재불량, 불법개조 등의 사유로 사고가 발생하며 사고 시 인명피해 위험성이 높아 일반 차량과 비교해 다양한 단속 유형이 존재합니다.
- 「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」에서는 적극적인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화물차 법규 위반사항을 명시하고 있으며, 지방자치단체장 등이 조례로써 화물차량 위반행위 신고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.
- 이에 따라 서울시는 「서울특별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」를 통해 위반행위 및 이에 대한 신고 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있으며, 구체적인 포상 금액 등을 명시하고 있습니다.

- 그런데, 현재 해당 조례는 법에서 추가된 덮개, 포장, 고정장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위반행위에 대한 내용이 빠져있습니다. 따라서, 본 개정안을 통해 현행 조례에 미비했던 위반행위 부분을 보완, 정비함과 동시에 화물자동차 안전 운행과 도로 운전자 보호를 위해 신고포상금 지급 대상을 현행법에 맞춰 확대하고자 합니다.
  
-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개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  
- 아무쪼록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의 현명한 판단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